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5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신성범・박정하・조은희

이만희 • 김승수 • 박대출

김종양 • 정희용 • 박준태

신동욱 • 유상범 • 조배숙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와 같 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 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또한,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

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(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신설).

#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자가 제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) ①        | 제5조(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) ①  |
| 누구든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없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 | 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록증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람을 제한할 수 있다.         |
| ②・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제33조(행정처분) ① (생 략)         | 제33조(행정처분) ① (현행과 같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승)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|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전단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     |

|         | <u>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</u>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         |
|         |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       |
|         | 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       |
| ② (생 략) 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  |